

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11. 9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위탁기간 만료(2023. 12. 31.)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2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승인 및 동의)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중독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, 사회복귀 지원 등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 도모
-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독관리에 대한 현장 경험이 많은 법인,

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필요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
-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마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면적	종사자 (명)	등록회원 (명)	운영단체	대표자 (센터장)	위탁기간
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	태화로 216 (태화동)	137.7㎡	4	100	(의)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	김복광 (이수희)	2021. 1. 1.~ 2023. 12. 31.(3년)

바. 위탁기간
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: 2024. 1. 1.부터 2028. 12. 31.까지(5년)

사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·결정

아. 2024년 소요예산(가내시): 329,190천원

자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제1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관련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
3. 경제적 효율성	○ 민간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, 전문성으로 인력관리 및 경비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중독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등으로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예상됨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중독 관련 서비스 및 지침 마련 등 목표에 따른 실적관리가 가능하고 중독관리 지표 및 성과평가 실시 등으로 사업성과 측정이 용이함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관련 법령 및 위탁·수탁 협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함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○ 중독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으로 공개모집 및 선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

☞ **종합의견:**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며 민간 전문기관의 인력 및 운영방식 활용이 업무의 전문성과 비용절감 등 효율성이 더 높아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3. 추진일정

-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일정
 -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: 12월 중
 -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: 12월 말
 - 위탁·수탁 협약 체결: 12월 말

4. 참고사항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」 제15조의3

제15조의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2. 중독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
3.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
4.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
5.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

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2

제6조의2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4.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
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